



강남구 & 강남종합사회복지관

강남종합사회복지관

## 업무협약서

강남구와 강남종합사회복지관(이하 강남복지관)은 “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안정적 사회기반구축”을 위한 **【성인이행기 빈곤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지원사업】**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강남구 내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**빈곤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지원사업**을 추진함에 있어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사항) 강남구와 강남복지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.

### (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사항)

1. 대상자 발굴 및 세부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**빈곤아동·청소년 실태조사 정보제공**에 상호협력
2. 사업수행 기반 형성을 위한 지역 내 **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지원**에 상호협력

### (공모사업 선정후 협력사항)

1. 빈곤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지원사업에 필요한 **다양한 정보제공, 사업홍보, 인프라 구축**에 상호협력
2. 사업 참여가 필요한 빈곤 아동·청소년 **발굴 및 연계, 사례관리, 연계 서비스 제공**에 상호협력
  - 공동 통합사례관리
  - 대상자 발굴/의뢰/추천
  - 학습/직업 교육 등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연계
  -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 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지원

제3조 (신의성실준수) 강남구와 강남복지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 강남구와 강남복지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, 위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.

### 제5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1.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일로부터 발생하며, 양 기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2.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강남구와 강남복지관이 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월 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 
구청장 신 연 희

강남종합사회복지관  
관장 조 준 배

# 업무협약서



강남종합사회복지관(이하 강남복지관)과 강남구는 “빈곤의 대물림이 없는 안정적 사회기반구축”을 위한 **【성인이행기 빈곤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지원사업】**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강남구 내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**빈곤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지원사업**을 추진함에 있어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사항) 강남복지관과 강남구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.

### (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사항)

1. 대상자 발굴 및 세부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**빈곤아동·청소년 실태조사 정보제공**에 상호협력
2. 사업수행 기반 형성을 위한 지역 내 **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지원**에 상호협력

### (공모사업 선정후 협력사항)

1. 빈곤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지원사업에 필요한 **다양한 정보제공, 사업홍보, 인프라 구축**에 상호협력
2. 사업 참여가 필요한 빈곤 아동·청소년 **발굴 및 연계, 사례관리, 연계 서비스 제공**에 상호협력
  - 공동 통합사례관리
  - 대상자 발굴/의뢰/추천
  - 학습/직업 교육 등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연계
  -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 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지원

제3조 (신의성실준수) 강남복지관과 강남구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 강남복지관과 강남구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, 위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1.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일로부터 발생하며, 양 기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2.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강남복지관과 강남구가 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월 일

강남종합사회복지관  
관장 조준배

서울특별시 강남구  
구청장 신연희